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780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과세연월	기분	순번 ¹⁾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가산금 ²⁾	지방교육세 가산금 ³⁾	분기별합계
2007. 12.	2	1	74,660	22,390	2,230	670	99,950
2008. 6.	1	2	56,360	30,010	0	0	133,950
	1	3	43,680	0	3,000	900	
	합 계		100,040	30,010	3,000	900	
2008. 12.	2	4	93,370	28,010	2,800	840	125,020
2009. 6.	1	5	0	22,870	0	0	156,750
	1	6	117,070	12,250	3,510	1,050	
	합 계		117,070	35,120	3,510	1,050	
2009. 12.	2	7	28,980	32,610	0	0	145,540
	2	8	79,720	0	3,260	970	
	합 계		108,700	32,610	3,260	970	
2010. 6.	1	9	77,230	38,820	0	0	173,270
	1	10	52,180	0	3,880	1,160	
	합 계		129,410	38,820	3,880	1,160	
2010. 12.	2	11	102,420	35,830	0	0	159,940
	2	12	17,040	0	3,580	1,070	
	합 계		119,460	35,830	3,580	1,070	
2011. 6.	1	13	119,460	35,830	3,580	1,070	159,940
2011. 12.	2	14	0	13,840	0	0	146,610
	2	15	109,500	19,010	3,280	980	
	합 계		109,500	32,850	3,280	980	
2012. 6.	1	16	34,380	32,850	0	0	146,610
	1	17	75,120	0	3,280	980	
	합 계		109,500	32,850	3,280	980	
2012. 12.	2	18	83,970	29,860	0	0	133,280



	2	19	15,580	0	2,980	890	
	합 계		99,550	29,860	2,980	890	
2013. 6.	1	20	99,550	29,860	2,980	890	133,280
2013. 12.	2	21	10,620	29,860	0	0	133,280
	2	22	88,930	0	2,980	890	
	합 계		99,550	29,860	2,980	890	
2014. 6.	1	23	77,340	29,860	0	0	133,280
	1	24	22,210	0	2,980	890	
	합계		99,550	29,860	2,980	890	
2014. 12.	2	25	99,550	29,860	2,980	890	133,280
2015. 6.	1	26	99,550	29,860	2,980	890	133,280
2015. 12.	2	27	99,550	29,860	2,980	890	133,280

나. 원고는 2001. 8. 3.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3. 7.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1.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자동차세의 부과·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년경 채무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 1) 대조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확인서(갑 제6호증의1) 또는 납세고지서(갑 제6호증의2) 별로 기재하였다.
- 2) 지방세 납부확인서('가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는 납세고지서('가산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각 기재에 따라 기재하였다.
- 3) 위 각주 2)와 같다.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일 뿐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3. 4. 1. 원고에게 2001. 8. 3.부터 2015. 12. 31.까지 발생한 자동차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지방세기본법상 5년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는 뒤 1년이 훨씬 지난 2024.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62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4.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조세심판원이 2024. 2. 21. 원고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부적법한 소로서 각



하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2)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3)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1. 8. 3.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이후로 2016. 8. 2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멸실인정 등록이 될 때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라고 할 것이고, 등록명의인에 불과할 뿐 차량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4) 피고가 2023. 4.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부독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판사 정○○

판사 신○○



별지 1

2007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내역 : 2,380,540원

연도	기분	과세연월	자동차세 (가산금포함)	지방교육세 (가산금포함)	합계
2007	2	2007. 12.	76,890	23,060	99,950
2008	1	2008. 6.	103,040	30,910	133,950
	2	2008. 12.	96,170	28,850	125,020
2009	1	2009. 6.	120,580	36,170	156,750
	2	2009. 12.	111,960	33,580	145,540
2010	1	2010. 6.	133,290	39,980	173,270
	2	2010. 12.	123,040	36,900	159,940
2011	1	2011. 6.	123,040	36,900	159,940
	2	2011. 12.	112,780	33,830	146,610
2012	1	2012. 6.	112,780	33,830	146,610
	2	2012. 12.	102,530	30,750	133,280
2013	1	2013. 6.	102,530	30,750	133,280
	2	2013. 12.	102,530	30,750	133,280
2014	1	2014. 6.	102,530	30,750	133,280
	2	2014. 12.	102,530	30,750	133,280
2015	1	2015. 6.	102,530	30,750	133,280
	2	2015. 12.	102,530	30,750	133,280
합 계					2,380,540



별지 2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 (납세의무자)

-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끝.